

기안용지

(전화: 750-8407)

시행상
특별취급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축 27465-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3년	<div style="position: relative; height: 100px;"> 762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15%; left: 65%; border: 2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결재 산업경제국장 </div> </div>			
시행일자	'91. 4.				
보조 기관	산업경제국장 전결 농축과장 가족위생계장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i>김성철</i>	서 통 제	
기안책임자	여규학(손홍락)			발 송 인	
경유 수신 질조	각 안 참 조		발신 명 의	<div style="position: relative; height: 100px;"> 18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15%; left: 65%; border: 2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장 </div> </div>	
제 목	'91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제 1 안)					
수 신 : 내부결재					
제 목 : 같은 건					
1. 농축 27465-130('91. 1.29)호 '91년도 가족방역사업 계획과 관련됩니다.					
2.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족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하고 각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시방법:시보 게재)					
가. 기 간 : '91. 4.22 - 5.15					

1991년 4월 22일
 산업경제국장
(인)

나. 계획두수 · 35,000두

다. 대상 : 관내에서 사육하는 개(3개월령 이상)

라. 요령 : 구청별 자체계획수립 실시

1) 시술은 공수의 및 개업수의사 동원 실시

2) 예방주사를 필한 개에 대하여는 실시증명서 발급 및 축견패를

축주에게 교부.



마. 홍보

1) 각구에서는 동,통,반조직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방법 강구

2) 공보관은 매스콤을 통한 홍보

3) 서울시수의사회에서는 회원영 계획에 따라 홍보방법 강구

4)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를 통한 홍보

5) 지하철공사는 열차내 방송을 통한 홍보

박. 시술료 및 예방약 등 구입

1) 시술료 : 두당 1,500원(축주부담)

2) 시술재료 : 시술수의사 부담

3) 예방약 : 국비70%, 지방비30%

- 국비70%는 본청에서 구입 예정

- 지방비30%는 구청별 구입

- 본청배정분에 대하여는 인수증 제출

4) 실시증명서, 축견때 : 구청별 구입

사. 기 탁

1) 시술수의사 : 예방주사 실시대장 비치, 기록하여 3년간 보관,

실시증명서, 축견때 발급.

2) 구 청 :

- 각축병원 지도감독 철저

- 예방주사 실시대장 비치 및 기록보관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사업종료후 동물병원에서 보고된 실적의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실시결과를 보고하고

예방주사 실시사본은 관계서류와 함께 3년간 보관할것

3) 방견단속 철저 : 각구는 예방주사 실시기간중 특별단속 실시

첨부 : 1. 고시(안) 1부

2. '91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계획 1부.

(제 2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산업과장

제목 같은 건

1. 농축 274JJ-130('91. 1.29)호 '91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과 관련됨

2. 다음과 같이 '91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코자하니

실시기간중 약품보관을 철저히하고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

제1안 가 - 사항 이기시행

첨부 : 1. '91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계획 1부

2. 고시문 1부.

수신처 : 석구 1-22

(제 3 안)

추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참조 학무국장

제목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에 대한 계도 의뢰

1. '91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광견병 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2. 특히 광견병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주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방역이 중요

시되는 전염병이오니 이를 특별히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서문 1부.

(제 4 안)

수신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장

제목 같은 건

1. '91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에 의거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하오니 귀회 운영계획에 따라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본 사업 수행에 좋은 실적이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91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계획 1부

2. 고서문 1부.

(제 5 안)

수신 지하철공사 사장

제목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에 따른 열차내 방송 요청

1. '91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별첨내용을 홍보 의뢰하오니 열차내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첨부 : 홍보문 1부.

(제 6 안)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참조 가축위생과장

제목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보고

1. '91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보고합니다.

가. 실시기간 : '91. 4.22 - 5.15

나. 실시 계획두수 : 35,000두.

결재

(제 7 안)

수신 공보관

발신 산업경제국장

제목 같은건 고시 및 홍보 요청

1. '91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를 별첨과 같이 고시하고자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내용을 메스콤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문 1부, 2. 보도자료 1부.

(제 8 안)

수신 내무국장

발신 산업경제국장

참조 행정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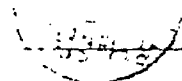
제목 반상회 공지사항 게재 의뢰

'91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를 거양코자 하오니 별첨 내용을 반상회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반상회 공지사항 자료 1부.



'91년도 제1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계획

(단위:두)

구분	계획량	약품배정	내용
종로	1,050	735	- 실시기간 : '91. 4.22 - 5.15
중	750	525	
용산	1,620	1,135	- 실시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개(3개월령 이상)
성동	2,630	1,840	
동대문	1,470	1,030	- 소요경비 : 약품비 국비: 70% 지방비: 30%
중랑	1,500	1,050	
성북	3,120	2,185	- 국비70%는 본청에서구입배정 - 지방비30%는 각구별 자체구입
도봉	2,700	1,890	
노원	350	245	- 기타사항
은평	2,930	2,050	
서대문	2,070	1,450	시술수의사: 예방주사 실시대상 비치, 기록 보관(3년)및 실시증명서, 추견매 발급
마포	1,980	1,385	
강서	1,120	785	
양천	1,670	1,170	구 청: 개축병원 지도감독 철저 (예방주사 실시대상 비치, 기록, 보관상태 수시점검)
구로	1,300	910	
영등포	1,290	905	
동작	1,940	1,355	- 예방주사 실시기간중 방견단속 특별 실시
관악	2,190	1,530	
강남	600	420	
서초	970	680	
강동	1,000	700	
송파	750	525	
계	35,000	24,500	

Handwritten signature and stamp in the top right corner.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 호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1. 4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 광견병은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렸을때 사람에게 전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본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 상 : 관내에서 기르는 모든 개(3개월령 이상)
4. 장 소 :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5. 기 간 : '91. 4.22 - 5.15
6. 기 타 : 본 기간중 예방주사를 팔하지 않은 개('89, '90년 접종을 필한 개 제외)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격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개 주인은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됩니다.
7. 문의처 : 해당 구청 산업과
시청 농축과 가축위생계(전화: 750-8407, 8)

홍 보 문

서울시에서는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 물렸을때 사람에게 전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므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빠짐없이 예방주사를 접종토록 합니다.

예방접종은 인근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며 시술료는 1,500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알려드립니다.

* 방송요청 시간 : '91. 4. 22 - 5. 15

년 상 회 공 저 사 항

제 목 :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안내

0 실시기간 : '91. 4.22 - 5.15

0 접종 시술료 : 1,500원(축주부담)

0 예 방 약 : 서울시에서 부담

0 시 술 장 소 :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관 련 법 규 달 칙

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 1.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을 받을것을 명 할수 있으며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수 있다.
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 명령)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명령을 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 종계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 주사, 약육, 투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살처분 명령) 3. 시 도지사는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축견이 옥외에서 배회하는것을 발견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역류하거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광견병이란

모든 온혈동물의 급성전염병으로서 광증, 정신장애를 나타내며 결국에는 마비되어 거의 예외없이 죽게되는 질병으로 개에 물렸을때 짐을 통하여 전염되는 것이 특징임